

[일련번호 : 72]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사유 및 구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해야 하고, 같은 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에 따라,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독촉)에 의거하면,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 (점유자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를 발송해야 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 해 3월에 부과 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시라 함은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및 채권 확보의 시급성 등을 감안, 다음 해 3월이 아닌 수시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르면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한편,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고지)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시유 및 구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및 독촉 고지를 지연하였고, 변상금 부과 처분 시 당해 처분에 따른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변상금 부과 소홀 내역

연번	건 명	변상금 부과대상 및 금액	지적사항
1	○○동 ○○○ (녹지) 시설녹지 무단점용 변상금 (2022년도 분)	○○○ (총 25,745,23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상금 부과 지연 · 2022년도 분은 '23. 3월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24.1월에 부과 - 사전통지 후 처분 지연 · '23.9.15.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 '23.10.6.) '24.1.4. 변상금 부과 (의견제출 기한으로부터 약 3개월 경과 후 처분) - 독촉고지 지연 · '24.1.4. 변상금 부과 (납부기한 : '24.2.5.) '24.11.6. 독촉(장어명가 외 3건) (납부기한 지난 50일 이내인 '24.3.26. 이전 독촉고지하여야 하나 약 225일 지연) - 불복 안내 누락 · '24.1.4. 변상금 부과 시 불복 안내 누락
2	○○동 ○○○ (녹지) 시설녹지 무단점용 변상금 (2023년도 분)	○○○ (총 24,363,2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상금 부과 지연 · 2023년도 분은 '24. 3월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24.12월에 부과 - 불복 안내 누락 · '24.12월 변상금 부과 시 불복 안내 누락 - 교보자산신탁 독촉고지 지연 · '25.2.6. 변상금 부과 (납부기한 : '25.3.21.) '25.12.11. 독촉 (납부기한 지난 50일 이내인 '25.5.10. 이전 독촉고지하여야 하나 약 215일 지연)
3	○○동 ○○○ (공원)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2023년도 분)	○○○○ (3,740,94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고지 지연 · '24.3.27. 사전통지 '24.4.16. 변상금 부과 (납부기한 : '24.5.16.) '24.11.6. 독촉 (납부기한 지난 50일 이내인 '24.7.5. 이전 독촉고지하여야 하나 약 124일 지연)
4	용왕산공원(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022년도 분)	○○○ (총 3,555,97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상금 부과 지연 · 2022년도 분은 '23. 3월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24.1.2.에 부과 - 불복 안내 누락 · '24.1.2. 변상금 부과 시 불복 안내 누락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